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정 1996. 8. 2
개정 1998. 3. 24 규칙 제1004호
개정 2001. 5. 24
개정 2005. 1. 1 규칙 제1139호
개정 2010. 5.11 규칙 제1238호
개정 2010.11. 2 규칙 제1246호
개정 2010.11.23 규칙 제1258호
개정 2011. 1.14 규칙 제1265호
개정 2011.11. 5 규칙 제1280호
개정 2013.10.28 규칙 제1320호
개정 2015. 5.12 규칙 제1377호
개정 2015. 7. 8 규칙 제138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2)

제2조(학위수여) ①우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통과한 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단, 자격시험 실시여부는 전공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5.12)

②우리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중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교육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말에 학위논문대체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5.12)

제 2 장 자격시험

제3조(종류) 자격시험은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4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5조(시험시기) 자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6조(응시자격)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삭제)

2.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에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3 장 논문 지도교수 및 학점대체제 학사지도교수

제8조(지도교수 배정 및 계획서 제출) ①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2학기말에 논문 지도신청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논문작성계획서 및 서약서(별지 제1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기간 중 학위논문대체학점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말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5.12)

② (삭제)

③ 논문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문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협의를 거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2조 3항에 의한 학위논문대체학점제 신청자는 2학기말에 학사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15.5.12)

제9조(지도교수 선정) 논문 지도교수의 선정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도교수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교수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영역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래강사가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지도 학생수) 논문 지도교수가 담당할 학생의 수는 학년당 3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지도 요지서)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학기 종강시까지 논문지도요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논문작성 및 제출

제13조(논문작성 요령 및 체제)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작성 요령 및 체제는 '학위논문작성요령'에 의한다.

- 제14조(논문 발표 및 제출) ① 2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발표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논문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전공주임교수는 1주일 이내에 논문발표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2)
- ② 논문 발표 후 전공주임교수는 논문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 발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2항의 절차를 마친 자는 별지 제11-2호 서식에 의한 연구윤리 서약서와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제 5 장 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 제15조(논문제출시기 및 기한) ① 논문의 제출시기는 제1학기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월, 제2학기에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1월로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제16조(논문심사 신청)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고, 논문 4부와 함께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구두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구두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구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두시험료와 함께 구두시험응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위원) 논문심사 위원 및 구두시험 위원은 논문 지도교수의 논문심사위원 및 구두시험위원 추천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제19조(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합격기준) ① 논문의 합격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구두시험은 논문의 최종 심사시에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제20조(논문심사 결과 보고) 논문심사 위원 및 구두시험 위원은 심사를 의뢰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구두시험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사정) 대학원위원회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에 합격된 자에 대한 사정을 석사학위수여 예정일 30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2조(서식 등) 석사학위논문 작성,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서식 및 학위논문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5. 11 개정 제1238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 개정 제1246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년 8월 31일 이전에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2010년 9월 1일 이후 본 조항 시행일 이전에 수료한자 및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본 규정 시행일 이후 수료자에 대하여 본 규정 제2조 제2항을 적용한다. 단, 초등상담교육전공은 제외한다.

부 칙<2010. 11. 23 개정 제12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2장의 삭제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폐지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 14 개정 제1265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5 개정 제1280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28 개정 제132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제4조,제6조는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5. 12 개정 제1377호>

(시행일) 이 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8. 개정 제1386호>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미제출 할 수도 있다.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초등교육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교육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교육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번호 _____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초등교육학과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의를 거쳐 교육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학위)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교육학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학위) (인)

학위번호 _____

[별지 제2호 서식]

_____학년도 제 _____차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원서						
응시구분	외국어시험 () / 종합시험 ()					
전 공		학번		성명		
연락처	휴대폰			근무처		
총이수학기				총이수학점		
종합시험 응시고목 (종합시험 응시자 작성)		전필/전선 구분		응 시 과 목 명		
		※ 불합격 과목 재 응시자의 경우 다른 과목으로 응시 가능하며, 불합격 과목 응시 년도 및 학기를 기재 바람			_____년도 _____차	
학위 수여규정 제6조에 의거 소정의 교과학점을 취득하고 응시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석사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 · 종합)에 응시 하고자 지원(추천) 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_____ (인) 추천인 : 지도교수 _____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석사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					
전 공		학 번		성 명	
논문제목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연구문제)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자료포함)					
지도교수 : (인)					

20 학년도(전 · 후)기 석사학위청구논문발표신청서					
전 공		학 번		성 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논문제목					
총이수학기				논문지도횟수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여부		외국어시험		합격 / 불합격	
		종합시험		합격 / 불합격	
학위수여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공개발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주임교수 :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석사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두시험 결과보고서

전공		학번		성명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심사 요지						
심사 결과	구 분	성 명	논문심사 (합 · 불)	구두시험		심사위원 서명·날인
				점수	평균점수 합 · 불	
	위원장					
	위원					
	위원					
최종판정	합격 / 불합격			지도교수 성명 :		
학위수여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구두시험 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장 :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 석사학위논문 합격은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구두시험 100점 만점에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최종 합격으로 평가함,						

서 약 서

본인은 아래의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석사학위 취소를 포함한 대학의 적절한 행정 처분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논문 제목 :

20 년 월 일

전 공 :

성 명 :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연구윤리 서약서

본인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다음의 ‘연구윤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 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학 과 : 전공 :
연락처 :
서약자 : (서명)
확인자 : 지도교수 (서명)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학점대체제 학사지도교수 배정신청서

전 공		학 번		성 명	
수료예정학기	20 학년도 학기				
학 점 취 득	학년도	제 1 학기		제 2 학기	

학위수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대체제 학사지도교수를 아래와 같이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속	직	성 명
학사지도교수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학사지도교수 : (인)

전공주임교수 :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 삭제

[별지 제16호 서식]

학점대체제 학사지도교수 변경승인신청서					
전 공		학 번		성 명	
학사 지도교수	변경 전 지도교수				
	변경 후 지도교수	소 속 : 성 명 : (인)			
	변 경 사 유				
학위수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점대체제 학사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학사지도교수 : (인) 전공주임교수 : (인)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귀하					